

<p>②시장은 제1항의 협의결과를 토대로 농협중앙회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협약에는 이자차액보전금의 지급규모, 지급기간, 지급시기, 지급방법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③농협중앙회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리는 연 7.5퍼센트이내로 한다.</p> <p>제9조(지원사항 통보) 농협중앙회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된 내용을 토대로 환경보전형 농업육성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였을 경우 1월이내에 지원받은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명칭과 대표자, 소재지, 지원내역등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.</p> <p>제10조(사후관리등) ①시장은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확인 또는 검사를 하거나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, 농협중앙회등 지원받는 부서에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</p> <p>②농협중앙회장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 환경보전형농업의 전과정을 지도·감독하고 농업생산물에 대하여는 검사를 실시한 후 출하 또는 판매하여야 한다.</p> <p>제11조(지원중단등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제10조제1항에 의한 확인 또는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확인·검사·보고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</li> <li>2. 농협중앙회가 환경보전형농업에 지원한 사항이 제8조 및 제9조의 협약내용과 다른 경우</li> <li>3. 농협중앙회가 제10조제2항에 의한 지도·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농업생산물에 대한 검사실시 결과 부적격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</li> <li>4. 농협중앙회장등이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의한 협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</li> </ol> <p>제12조(시행규칙) 시장은 농협중앙회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의 절차, 방법등에 관한 사항</p>	<p>과 환경보전형농업의 작목별 준비기간, 농업생산물의 검사, 출하 및 판매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12조[건축물폐채류등 수집·운반업허가] ① 일반폐기물중 건축물폐채류 및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수집·운반업의 영업구역은 서울특별시 전지역으로 한다.</p> <p>②일반폐기물중 건축물폐채류 및 다량배출 일반폐기물의 수집·운반업허가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관할구청장이 한다.</p> <p>③구청장은 제2항의 허가내용을 타구에 통보하여야 한다. 변경허가시에도 또한 같다.</p> <p>④구청장은 제2항의 건축물폐채류 수집·운반허가를 함에 있어서 규칙 제12조에서 정하는 시설·장비·기술능력등 허가요건 외에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중간집하장확보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hr/> <p>6. 서울特別市公共施設内の新聞·福券販賣臺, 賣店및自動販賣機設置契約에關한條例案再議要求案(서울特別市長 提出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15時 38分)</p> <p>○議長 白昌鉉 다음은 議事日程 第6項 서울特別市公共施設内の新聞·福券販賣臺, 賣店및自動販賣機設置契約에關한條例案再議要求案을 上程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議事棒 3打)</p> <p>同 條例案은 1995年 3月 3日 第75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에서 議決되어 執行機關에</p>
---	--